

# 일본,

## 입찰감시위원회 설치·운영키로

일본 건설성은 입찰·계약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감시와 애로사항처리에 대한 신청 등을 취급하는 「입찰감시위원회」를 4월중으로 설치·운영토록 각 지방건설국에 시달한 한편, 입찰감시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했다.

입찰감시위원회는 지난해말 중앙건설심의회의 건의를 받은 업무집행개선추진본부의 결정으로 설치되게 되었는데, 각 지방건설국장의 사적 자문기관역할을 하는 동시에 입찰감시와 애로사항처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.

입찰감시위원회는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공공공사에 관한 경험과 법적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건설공사분쟁심사위원, 교육위원회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.

위원회는 지방건설국으로부터 직할공사의 입찰과정 지명정지등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, 이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된 직할공사에 대해 경쟁참가자격 지명업자선정이 정당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. 그러나 계약금액이 2천만엔이하인 공사는 보고대상공사에서 제외토록 했다.

건설성은 공사를 무작위로 추출할 때 ■

공모형·공사회망형 지명경쟁입찰 ■일반경쟁입찰 ■기타 지명경쟁입찰의 일반토목공사 ■일반토목공사이외의 공사 ■수의계약방식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방식별로 1, 2건의 공사를 선정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.

또 공모형 공사회망형 지방경쟁입찰에 관한 애로사항처리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, 신청이 있을때 처리회의를 열어 심의토록 했다.

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의견서를 마련하여 심의결과를 각 지방건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건설성은 애로사항처리는 미지명이유를 통지받았을때의 애로사항처리회신(1차처리)에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신하고 본인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, 특히 애로사항처리 재신청시에는 입찰·계약을 집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.

또 업체로부터 입찰·계약집행정지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건설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.

한편 건설성은 입찰감시위원회를 1년정도 운용해본 후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.